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기금 지원 의무화 및 사문화 조항 정비〉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8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4.
3. 회부연월일 : 2025.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 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안 제20조의2),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사비의 채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 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 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공사비의 채원 등) ① ----- ----- ----- ----- ----- -----.
1. 재정융자금	<삭 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	④ ----- ----- ----제1항제2호에----- -----

현행	개정안
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생략)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금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생략)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자금 조치) ① ----- ----- ----- -----국가보조금을-----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8조(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 ----- -----.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u>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u> <u>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u> <u>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u> <u>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u> <u>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u> <u>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u>	

현행	개정안
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填)한다. 제14조(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 5. (생략)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제14조(자금 조치) ① ----- ----- ----- -----<u>국가의</u>-----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 ----- ----- -----<u>전액을 지원한다.</u>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 ---<u>제9조</u> 및-----<u>제2항</u> <u>을</u>----- . -----<u>제9조제1항</u> ----- ----- -----<u>본다.</u>

현행	개정안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 제22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u>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u>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u>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 -----<u>배전시설공사와</u>----- ----- ----- -----. ② ----- ----- <u>배전시설공사의</u>-----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도서·벽지에 전기시설을 구축하는 공익사업으로 국가(기금)가 결손액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금 지원 비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지원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사업비	기금 지원액(75%)	한전 부담액(25%)
지자체 결손지원	11,727	8,795	2,932
기술지원	1,094	821	273
한전 결손지원	105,168	78,876	26,292
투자비	32,467	24,350	8,117

구분	전체 사업비	기금 지원액(75%)	한전 부담액(25%)
합계	150,456	112,842	37,6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현행법상 재정융자금¹⁾ 제도는 2011년 이후 신규 집행 실적이 전무하며, 현재는 기존에 발생한 융자금의 상환(잔액 약 45.8억 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재정융자금 집행 현황 (최근 20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현재
고객호수(호)	237	16	4	5	10	11	0
융자금(백만원)	236.8	16	4	5	10	11	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정책의 가변성에 따른 도서 지역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익적 사업 비용을 국가가 온전히 부담하여 전기사업자의 재무적부담을 완화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또한, 실무상 활용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 지원의 의무화에 따른 재정 당국과의 이견 및 사문화 조항 삭제 과정에서의 법적 연속성 확보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첫째, 기존 김원이의원안(의안번호 2210218)과 병합 심사 여부임.

개정안과 같이 기금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김원이의원안이 25. 9. 25.에 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심사 시 권향엽의원안에 포함된 '재정융자금 조항 삭제' 등 추가 정비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 할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법안 처리 현황 비교]

구분	김원이의원안 (2210218)	권향엽의원안 (2212688)
핵심 내용	기금 지원 의무화 (전액 지원)	기금 지원 의무화 + 재정융자금 삭제
진행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둘째, 관계 부처 간 이견 및 정책적 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보편적 공급 의무²⁾ 및 예산 편성 자율권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는 공익과 국가 재정 운영의 탄력성 사이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재부 vs 한전 주요 쟁점 비교]

구분	기획재정부 입장	한국전력공사 입장
책임 분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책임 분담 필요	수익성 없는 공익 사업은 국가 전액 지원 타당
예산 편성	법률로 예산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기금 축소 시 설비 유지보수 및 증설 차질 우려

2) 「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구분	기획재정부 입장	한국전력공사 입장
재무 영향	경영 개선 상황 감안 필요	누적 부채(205조) 및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시급

셋째, 재정융자금 삭제 시 상환 잔액 보호를 위한 부칙 보완이 필요함.

현재 미상환 재정융자금 잔액은 약 45.8억 원으로, 조항 삭제 시에도 안정적인 상환 근거를 유지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용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칙 제2조의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상환 기간이 최장 35년(5년 거치 후 30년 상환)임을 고려할 때 융자 시점에 따른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하는 수정안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 제2조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원안)	수 정 안 (기후부 제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융자금을 융자받은 전기사용자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7684호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재정융자금은 종전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 당시 시행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금 지원 의무화 및 사문화 조항 삭제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타 사업의 경우, 법률에서 '부담한다' 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와 같이 강행 규정을 두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존재함.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규정 사례]

법령명	지원 대상 및 내용	규정 방식 및 실태 ³⁾
발전소주변지역법 ⁴⁾	특별지원사업 비용 부담	의무 (부담한다)
신재생에너지법 ⁵⁾	발전차액(FIT) 지원	의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사업법 ⁶⁾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 등	임의 (사용한다) / 실무상 전액 지원

[문구에 따른 법적 구속력 차이]

문구	법적 성격	실무적 영향
부담한다 / 전액 지원한다	의무 (강행)	예산 편성 시 100% 반영이 법적 의무가 됨.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준의무 (강행)	타 사업보다 먼저 지원해야 하므로 실질적 의무에 가까움.
사용한다 / 지원할 수 있다	임의 (재량)	기금의 용도만 정해진 것으로,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함.

3) 법령 해석상 '사용한다'는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사용 목적 조항'에 해당하며, 특정 대상에게 특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재량권의 존재: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은 기금 관리 주체(기재부·기후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규모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정부가 지원 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더라도, '사용한다'는 규정 하에서는 "기금을 해당 사업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함.

-의무 규정과의 비교: 반면 '부담한다'나 '전액 지원한다'는 표현은 국가가 해당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는 강행 규정이 되어, 예산 당국의 재량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6)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12. (생략)

문 의 처
02)6788-5537